



Unbundling Competition

에피소드 4: 동남아시아의 경쟁법 – 베트남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HSF
홍콩 사무소의 파트너 및
아시아
경쟁법(독점규제법)분야
책임자인 Adelaide Luke와
호치민시에 있는 Frasers Law
Company의 파트너 및
경쟁법(독점규제법)분야
전문변호사인 Justin Gisz가
새로운 경쟁법(법)과 베트남의
경쟁 규제 기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논의되었던 태국,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약 20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법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집행 또는
합병 통제 결정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발효된 신법은 경쟁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중 경쟁 기관은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사 및 판결 권한을 가진 단일
규제 기구인 국가 경쟁 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NCC")로
통합될 것입니다.

신법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구법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경쟁적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효과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불법으로 남아있는 소위 "하드
코어" 행위(예: 카르텔 행위)와는 별도로
(더 이상 구법에 따른 30%의 시장 점유율
"안전 항구"의 적용을 받지 않는) NCC는
이제 해당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법은 이 평가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제공합니다.

"지배력"은 구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법
또한 기업의 경우 30%, 또는 집단 지배의
경우 50%라는 낮은 기준선으로 지배력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며, 이는 반증 가능한
가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장 점유율
기준선보다 낮더라도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에서는 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병 통제 측면에서 새로운 신고 제도는
전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구
정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신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시장점유율, 매출액 /
자산가치 및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세 가지
대안 기준을 제시하며, 이로 인해
신고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는 거부권과 같은 부정적인
통제가 신고를 유발할 수 있는지(따라서
50:50 합작 회사의 경우 신고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거래에
있어 신고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논의된 태국의
신법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신법은 특정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NCC가 더욱 활발 해짐에 따라 이러한
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